

2024년 제1회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집중심리클리닉 상담사, 시간제동반자) 채용 공고

2024년 제1회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집중심리클리닉 상담사) 공고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재)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종	기관	분야	인원	직무내용	비고
기간제	계		2		
	파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집중심리 클리닉 상담사	1	- 자살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관련업무	
		시간제 동반자	1	-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 그 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관련업무	

2. 응시 자격기준

- 연령공고일 전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정년) 미만인 자
- 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응시 결격사유 적용기준일: 최종시험 예정일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 응시자격요건

- 임용직급 분야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 중 한 개 이상 항목에 충족하여야 함

기관	임용분야	채용인원 (명)	자격기준(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원 기준)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집중심리 클리닉 상담사	1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험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시간제 동반자	1	① 관련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단,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③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상담·지도, 청소년(지도)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 ※ (①, ②, 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자격요건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자 우선 채용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는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을 말함.
- ※ 청소년관련학과는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등과 장애인 관련학과 등을 말함
- ※ 청소년 관련 분야는 학교,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법에 의한 시설과 다네 등 청소년 유관기관을 말함.

○ 우대사항(시험 가산점수)

구분	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보훈상담센터 ☎1577-0606)

3. 시험 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합격자 결정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함

[면접시험]

- 각 위원에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상”(6점) 이상인 자 중 각 위원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다만, 5가지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저용소에 대하여 2인의 시험위원 모두 “하”(2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가 6점 이상이라도 불합격됨
- 2인의 시험위원이 평정한 합계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6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됨
- 서류 미제출자, 면접 불참자 등은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을 재공고 할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함

5. 채용일정

- 채용공고: 2024.01.10.(수)~2024.01.19.(금)
- 응시원서 접수: 2024.01.11.(목)~2024.01.19.(금), 09:00~18:00
- 접수처
 - 방문접수: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복지동 6층,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지원팀(물망초)
 - 등기우편 접수: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복지동 6층(☎10894)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이메일 접수: paju1388@pcy.or.kr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 < 방문접수 > ※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 등기우편 접수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도달 분에 한함
 - 우편봉투 겉면 '2024년 제1회 파주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집중심리클리닉 상담사/시간제동반자) 채용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 이메일 접수 >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PDF 저장 후 제출
 - 이메일 제목 '2024년 제1회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간제(집중심리클리닉 상담사/시간제동반자) 채용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4.01.22.(월) 예정
- 면접시험: 2024.01.24.(수) 14:0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4.01.25.(목) 예정
- 임용예정일자: 2024.01.29.(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www.pcy.or.kr) 채용공고란에 공고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청소년복합문화센터 미화 직군 제출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팩스, 이메일출력본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단,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7. 보수 및 복무

-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중심리클리닉 상담사
 - 보 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내부 보수기준 적용
 - 근무기간: 2024.01.29.~12.31.
 -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 근무형태: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주말, 공휴일에도 근무 가능
-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제동반자
 - 보 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내부 보수기준 적용
 - 근무기간: 2024.01.29.~12.31.
 - 근무시간: 주 12시간 근무
 - 근무형태: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및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주말, 공휴일에도 근무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됨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파주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7조에 의거 하여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됨 (※영리업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하고,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 서류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등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채용절차 관련 문의: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지원팀 (☎031-540-5311)